



관계부처 합동

보도자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

2022. 3. 10.(목) 11:00

담당 부서
<총괄>

행정안전부
복구지원과

책임자
담당자

과 장
사무관

정우철 (044-205-5310)
오준현 (044-205-5318)

	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신일철 (044-205-61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창석 (044-205-6171)
	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	책임자	과 장	이태석 (044-20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최기수 (044-205-5334)
	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천준호 (044-205-3702)
		담당자	서기관	장강혁 (044-205-3703)
	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미혜 (044-215-74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수 (044-215-7431)
	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윤경 (044-203-6345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훈 (044-203-6357)
	국방부 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장성준 (02-748-57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수 (02-748-5761)
	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	책임자	기획관	우승용 (044-203-2280)
		담당자	사무관	장용만 (044-203-2291)
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재식 (044-201-15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성만 (044-201-1512)
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중기 (044-201-4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래 (044-201-4479)
	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	책임자	기획관	임영봉 (044-202-2390)
		담당자	사무관	임화영 (044-202-2392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	책임자	과 장	조현훈 (044-203-5580)
		담당자	사무관	신국재 (044-203-5582)
	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종태 (044-204-7390)
		담당자	사무관	최우정 (044-204-7391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	책임자	과 장	구본준 (044-202-6430)
		담당자	사무관	김근우 (044-202-6434)
	국세청 징세과	책임자	과 장	이은규 (044-204-3001)
		담당자	사무관	유창성 (044-204-3037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최성규 (02-2100-2862)
	산림청 산사태방지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혁 (042-481-4270)
		담당자	사무관	강효엽 (042-481-4272)
	경찰청 위기관리센터	책임자	총 경	박현수 (02-3150-2961)
		담당자	경 정	이용상 (02-3150-2362)
	소방청 119상황실	책임자	실 장	엄준욱 (044-205-7070)
		담당자	담당관	김상현 (044-205-7084)

정부, 「동해안 산불피해 수습·복구지원 방향」 발표 -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·삼척·강릉·동해에 범정부 지원 -

- 정부는 지난 3.4.~5.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·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, 오늘(3.10.)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-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(3.6. 울진·삼척, 3.8. 강릉·동해)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.
-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.14일(잠정)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,
 -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·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.15일부터 3.18일(잠정)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-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**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 방향**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, 생활안정지원, 농·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,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,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,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

-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.
 - ※ 임시 조립주택은 24㎡(약 7평) 크기로서 방, 거실,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
-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*을 제공(1년 무상 거주, 연장 가능)하고,
 - * 기 확보된 조립주택 우선 제공, 부족분은 신규 제작·지원

-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·민간 숙박시설,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<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>

- ❖ [지원대상] 전·반소 피해주택(피해조사 후 확정)
- ❖ [지원절차] 수요조사 → 시공사 선정 → 제작·기반공사 → 입주

- 또한,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·생활품,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,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.

-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%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며(긴급지원주택),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(최대 8,840만원)를 지원할 예정이다.

[긴급지원주택(공공임대주택) 지원 개요]

◆ (공급대상 주택)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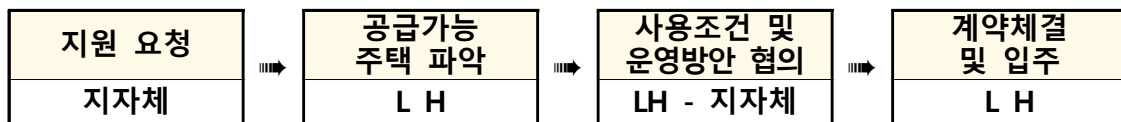
⇒ 건설임대주택(국민·영구임대),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,
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

◆ (임대조건) **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% 감면**

*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

◆ (지원기간) **2년간 지원** *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연장 가능

◆ (공급절차)



- ① 건설·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,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
-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,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

-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(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하고, 민간단체·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·배부 등을 지원하고,
 -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'마음 안심버스'를 운영하며,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.
 - ※ 24시간 핫라인 상담 전화(☎1577-0199)
 - 또한,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, 화재로 분실·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.
-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,
 -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,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,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.
-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, 부탄캔을 보급하고, 콘센트,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,
 -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(전기·가스)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·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,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.
- 또한,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(1인당 월 10kg),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.

2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

-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(최대 50%, 3개월분, 인적·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)·연체금 징수예외(최대 6개월), 국민연금 납부 예외(1년 이내, 사유 지속시 연장)·연체금 징수예외(6개월)를 적용하고,
 -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·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·인하(3개월)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**산업부**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**전기요금**(1개월분, 최대 200만원), **가스요금**(1개월분)에 대한 **감면** 및 **납부유예**를 추진한다.

※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 연료비 지원 검토

지원분야	지원기준		
전기요금	멸실 건축물		파손 건축물
	요금 100% 면제 (월 200만원 한도)		요금 50% 경감 (월 100만원 한도, 주택용은 100% 면제)
가스요금	용도	전파주택	반파·침수주택
	취사용	1,680원/가구당	1,680원/가구당
	취사·난방용	12,400원/가구당	6,200원/가구당

- **과기정통부**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**통신서비스 요금 감면**(이동전화 세대당 12,500원, 유선전화 월요금 100%, 인터넷 월요금 50%), 해당 지역 무선국의 **전파사용료 전액 감면**(6개월 분) 등을 추진하고,
 - 유료방송서비스(IPTV, 케이블 TV, 위성방송 등) 이용자에 대하여 **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**(기본요금의 50% 이상)도 지원할 예정이다.
 - 우정사업본부 **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**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, 예금·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**취급수수료 면제**,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**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**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.
- **국방부**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**세탁, 난방, 식수, 의료, 방역**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**교육부**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**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·정서 상담**을 지원한다.
- **소방청**은 이재민 수용시설,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**생활용수를 지원**할 계획이다.
- **경찰청**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**교통과태료·범칙금**(교통, 경범죄)에 대해서 3개월간 **납부 유예**를 추진한다.

3 농·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

-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벼씨,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,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·장비 지원, 농기구, 비닐,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,
 -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, 사료·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,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·기자재 등을 지원한다.
 - 아울러,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·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,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,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%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.
-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(이자율 1.8%)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와 함께,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·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.

4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

-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(중소기업 최대 10억,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), 보증료율 우대(0.5% → 0.1%), 기 대출·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(18개월 이내), 만기 연장(1년 이내) 등을 지원한다.

구분	지원내용	
융자	중소기업	최대 10억 이내, 1.9% 고정, 2년 거치 3년 상환
	소상공인	최대 7천만원 이내, 2.0% 고정, 2년 거치 3년 상환
보증	중소기업	운전자금 5억,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90% 보증, 보증료율 0.1%
	소상공인	최대 2억원 이내, 100% 보증, 보증료율 0.1%

- 또한,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.

-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%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%까지 확대 허용하고,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.
-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(1년)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.

<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사업 >

- (지원규모) 일반용자 5,490억원, 특별용자(신용보증부 운영자금) 1,000억원
- (기준금리)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적용('22년 1분기 2.25%)
* 중소기업은 0.75% 우대(1.5% 적용), 중저가 숙박시설 1.25% 우대(1% 적용)
- (이자감면) '22년 용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용자금리 일괄 0.5%p 감면지원
- (상환유예) '22년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용자원금을 1년간 유예

- 또한,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용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.

< 스포츠산업 용자 개요 >

- (지원규모) '21년 1,062억원(+기금변경 300억원) → '22년 1,843억원
- (이율/형태) '22.1분기 2.1% /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(국민은행 등 13개 시중은행)
- (지원대상) 우수체육용구업체, 스포츠서비스업체, 체육시설업체
- (법적근거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7조(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) 제2항 등

-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(용자)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 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.

5 세제 및 금융 지원

-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(최대 1년) 및 지방세 부과액·채납액 징수 유예(최대 1년)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,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(0.3% 내외), 만기 연장(최대 1년)을 지원한다.

※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

-
-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**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,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**(최대 9개월)하고,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**강제징수 집행 유예**(최대 1년) 조치를 할 계획이며,
 -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(20% 이상)한 경우, **소득세·법인세를 공제**하고,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**연말까지 세무조사** 등을 연기한다.
 - 금융위는 **정책금융기관**(산은, 기은, 신보, 농신보)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**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** 및 **만기연장**(최대 1년)을 추진한다.
 - 또한, **직접피해**를 입은 **중소기업**에 대한 **신보 특례보증**(최대 5억, 보증료율 0.1%), **농림어업인** 등에 대한 **농신보 특례보증**(최대 3억, 보증료율 0.1%)을 통해 **복구자금**을 지원한다.
 - **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“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”**고 강조하면서,
 -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 - 아울러, “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,
 -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.”고 당부하였다.
-

참고

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요약

구분		주요 지원내용	비고(소관)
F4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			
긴급구호	구호물품심리 지원	• 응급구호세트·식료품·급식차 등 긴급 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	행안부
	긴급복지 상담소 운영	• 긴급복지상담소 운영, 이재민·피해가구 심리지원	복지부
	통신서비스 지원	•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기자국 운영, 와이파이가 추가 설치 등	과기부
	대피시설 전력 등 지원	• 이재민 대피시설 긴급전력 무상 설치 지원(콘센트, 전등) • 취사용 이동식 부탄연소기, 부탄캔 보급 등 지원	산업부
주거지원	임시조립주택 지원	• 7.3평 규모, 1년 무상거주(연장 가능) • 입주 전 공공·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	행안부
	긴급지원주택 지원	• 공공임대주택을 2년간 임대료 50% 감면하여 지원	국토부
	재해 주택복구자금 용자	• 복구 자금 용자(최대 8,840만원(연1.5% 금리로 17년간 분할 상환))	국토부
F5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			
공공요금 감면	건강보험료·국민연금 등	• 건강보험료 경감(최대 50%, 3개월분) 및 연체금 징수예외 • 국민연금 납부 예외(최대 1년) • 의료급여 지원(선정기준 충족 시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3개월 면제·감면)	복지부
	전기·가스요금	• 전기(최대12개월분)·가스요금(1개월분)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	산업부
	통신요금·전파사용료	• 통신요금 감면(전화 세대당 12,500원, 인터넷 월요금 50%), •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(6개월분) 지원	과기부
생활회복	생활회복 지원	• 軍 자산 활용 세탁·난방·식수·의료·방역 등 생활회복 지원	국방부
	심리·정서 지원	•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·정서 지원	교육부
	생활용수 지원	• 이재민 수용시설, 수도파손 민가 등에 생활용수 지원	소방청
F6 농·임업인 영농재개 및 지원			
영농재개	무상 양곡 지원	• 정부 보유 법씨(202톤), 씨감자 무상공급	농식품부
	농기자재·농기계 수리	• 피해 농기자재(비닐, 호미, 낫, 삽, 육묘상자, 상토 등) 보급 • 농기계 제조업체 A/S반 무상 수리 지원	"
	축산업 지원	• 피해 가축 수의사 진료·처방, 사료·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	"
경영자금	농업인 경영자금 지원	•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, 이자(2.5%) 면제, 신규 대출 지원	"
	임업인 경영자금 지원	• 상환연기·신규대출(20백만원) 지원(연이율 1.8%, 1년 거치 1년 상환)	산림청
F7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			
중소 소상공인 지원	정책자금 용자 등 지원	• 정책자금 용자·보증지원(보증료율 0.5% → 0.1% 인하) • 소상공인 보증 한도 확대(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) • 기 대출 보증금 상환 유예(18개월), 만기연장(1년 이내)	중기부
	지역상품 판로 확보	•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상품 판매전 개최	"
경제활동	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	• 재해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기간(사용하지 못한 기간) 동안 임대료 감면	행안부
	지역사랑상품권 할인	• 산불피해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인상(10% → 15%)	"
	관광업체 등 금융 부담 완화	• 관광진흥개발기금·체육진흥기금 용자상환 유예 및 이자감면 ※ '22년까지 원금 도래업체에 대한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(0.5%)	문체부
F8 세제 및 금융 지원			
세제·금융	국세 징수 유예, 공제 등	•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• 사업용 자산 20%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	국세청
	지방세 감면 및 금융 지원	• 취득세 면제, 지방세 납세·체납처분 유예(6개월간 최대 1년까지 연장) • 새마을금고 대출지원(대출금리 0.3%내외 우대, 최대12개월 만기연장)	행안부
	재해관련 보험금 및 금융지원	•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지급(추정보험금 50% 내 선지급) • 대출보증 상환 및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복구자금 특례보증 공급	금융위